

“세녹스”는 첨가제로 위장된 “유사휘발유”

산업자원부

2002년 6월이후 알콜연료·대체에너지·첨가제 등을 주장하며 국내휘발유시장에서 시판되다 정부의 단속으로 잠잠하던 소위 “세녹스”가 2002년 10월부터 별도의 판매소를 통해 플라스틱통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유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불법판매 확대의 조짐이 있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 ① 전형적인 “유사휘발유”로서 불법제품이며,
- ② 현재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 ③ 세금액이 총매출액보다 큰 기형적 손익구조를 갖고 있으며,
- ④ 국내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고,
- ⑤ 비정상적인 판매로 취급상 화재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자, 판매자 모두 석유사업법 위반이 되고, 처벌대상이며 실제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당했거나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현재, 사용자 처벌규정과 행정처분 규정이 다소 미비한 점 등을 조만간 보완하여 세녹스유통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 세녹스(유사휘발유) 처리현황

- 2002년 6월이후 전국 11개 주유소에서 “대체에너지”임을 주장하는 자동차용 연료가 『Cenox』라는 상표로 시판 (990원/ℓ)
 - 휘발유(1,250~1,350원/ℓ 선)보다 싼값으로 국내시장 급속확산
- Cenox 개요
 - 용제(Solvent), 메틸알콜(Methyl Alcohol), 톨루엔(Toluen) 등을 60:10:30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석유화학제품
 - 자동차용 “휘발유품질기준”에 미달(석유품질검사소 검사)
 - “첨가제로서 환경기준”에는 일단합격(국립환경연구원 인정)
-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상 “유사휘발유”로 판정, 단속 실시
 - 2002년 1월 이후 산자부는 질의회신에서 “법 위반”을 수차례 경고
 - 제조회사[(주)프리플라이트]는 “첨가제”임을 주장하며 2002. 6월부터 시판강행 ⇒ 2002. 12월 말까지 최소 83천배럴 판매(추정)
- 산자부는 유통질서 혼란과 사태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 실시
 - 적발된 주유소(13곳)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여 판매행위 소멸
 -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부과
 - 제조사는 산자부가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통보
 - ⇒ 검찰기소후, 법원에 계류중 (5년이하징역 or 벌금 2억원)
 - ⇒ 국세청은 휘발유와 동액 세금부과 (2002. 6~

9월분 45억원)

- 환경부도 “첨가제 기준을 1%이내”로 낮추기로 결정
- 세녹스 제조사는 언론사 등에 자료배포 및 법적 대응 태세
 - 석유사업법상 행정조치가 곤란한 별도 판매소를 통해 변칙적 방법으로 불법판매 계속중
- 1심판결이전이라도 ① 유회사 등 원료공급차단, ② 시도·국세청등과 공조, ③ 석유사업법령개정 등으로 근절 방침.

□ 세녹스측의 사전탐색

- 2000. 1월경부터 “한중교역상사”는 산자부·재경부등에 알콜연료의 석유사업법·교통세법 적용여부 등 문의
 - 산자부는 “석유제품은 아니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할수 있음” 및 재경부는 “교통세법상 휘발유와 같은 과세대상임”을 답변
- 2002. 1월 “(주)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유사 석유제품 해당여부 문의
 -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답변

□ 국내 석유시장에 Cenox의 판매확산

- 2002. 6월초 (주)프리플라이트는 “Cenox는 대체에너지이자 알콜연료이며, 환경부가 인정한 첨가제로,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다”고 홍보하며 전국 13개 주유소에 판매
 - 휘발유가격 1,250~1,350원/ℓ 대비, 990원/ℓ 에 세녹스 판매

- 산자부(석유산업과)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지시(2002. 6. 7)하고 단속 방침을 정함.
- 산자부측의 단속으로 주유소를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주)프리플라이트는 별도의 판매소를 모집하여 주유기 또는 플라스틱통을 이용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판매개시 (2002. 10월)
- 세녹스 단속이 법적논쟁으로 장기화되자 2002. 11월이후 LP-Power, ING 같은 유사세녹스도 시판개시

※ 2002. 6~12월말간 세금부과액(추정치)

	2002. 6~9판매분	2002. 10~12판매분	합계
- 판매물량	33천배럴	45천배럴	83천배럴
- 세금부과액	44.9억원	54.6억원	99.5억원

- 2002. 6~12월 세녹스판매량 83천배럴은 국내 휘발유소비 0.13%
- 2002. 6~9월 세금부과액은 44.9억원은 목포세무서가 이미 부과했고, 나머지 54.6억원은 조만간 부과예정으로 알려짐.
- 세녹스제조사는 현재 1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기중
- 산자부 추정에 의하면 제조사 매출액 87.1억원, 판매소 유통마진 39.6억원

□ 산자부, Cenox를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단속

- 산자부는 “Cenox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규정, 지자체·검찰·경찰·석유품질검사소 등에 단속을 하도록 조치

(2002. 6.)

- 석유품질검사소는 Cenox를 판매한 13개 주유소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 (2002. 6.)
- 석유품질검사소 : “Cenox는 알콜·톨루엔·용제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자동차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며 휘발유 품질기준(옥탄값, 증기압 등)에도 미달되는,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임”

- 석유산업과는 (주)프리플라이트 관계자(회장 石門城)를 불러 제조·공급사실 확인(구두)

- 산자부, “세녹스 강력단속” 천명 (2002. 6. 28. 보도자료) 및 행정조치

- 지자체로 하여금 적발된 13개 주유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하고,
- 검찰(서울지검)에 형사고발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
- 국세청에 관련사실 통보하여 조세를 추징하도록 함.
- 이와함께 산자부 기자실에 세녹스에 관련한 보도자료배포(6. 29 및 8. 26)와 관련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 수차 배포

□ Cenox 단속결과

- 2002. 9월 이후 주유소에서 세녹스 판매행위는 소멸
- 지자체는 13개 판매주유소를 행정처분(사업정지 3월 or 과징금 5,000만원)과 고발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억원이하) 병행
- 서울지검은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를 “석유

사업법제26조 위반”으로 기소(2002. 10. 31), 현재 서울지법에서 계류중

- 2003. 2. 10. 1차공판이 있었으나, 세녹스측 궤석으로 공판연기(3. 20)

○ 환경부는 “첨가제 첨가비율을 1%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 예정 (법령발효 감안 2003. 6월말 시행)

○ 국세청(목포세무서)은 일단 2002. 6월~9월분 세녹스 판매분에 대하여 휘발유와 동물의 세금 부과(44.9억원) 조치, 나머지 2002. 10월~12월분 54. 6억원도 조만간 부과예정으로 알려짐.

- 제조사측은 현재 1억원만 납부후 나머지는 연기 상태

- 국세청은 연기기한 만료시점인 2003. 3월 이후 제조시설 등에 압류절차할 것으로 예상

□ Cenox측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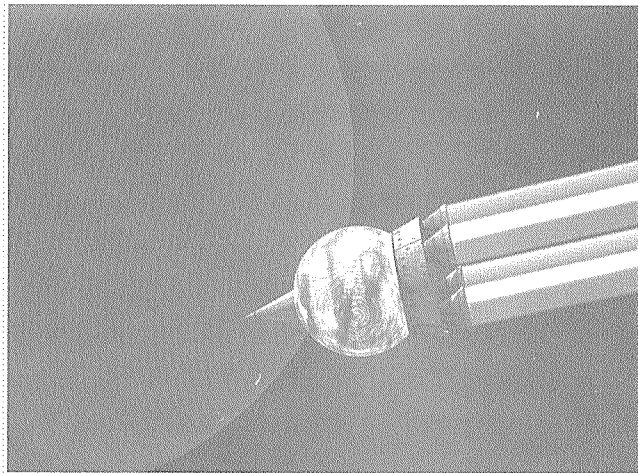
○ 세녹스측의 주장

-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는 석유사업법 26조에 문제가 있고,

- 대체에너지이며 신개념의 알콜연료인 세녹스를 산자부가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탄압한다고 주장 ⇒ 신문 · 방송에 지속적 홍보

○ 검찰이 “석유사업법 26조위반”으로 기소하자, 거물변호사를 다수동원,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유소에서 세녹스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행자부(소방본부)로부터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받아 별도의 판매소를 통해 2002. 10월경부터 재판매 강행 (일부 주유기판매, 대부분 용기판매 등)



- 별도의 판매소는 석유사업법상 행정조치대상아닌 점을 이용

- 시도는 판매소를 검찰에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고발조치

⇒ 현재 수사진행중

○ 세녹스 단속이 사법절차상 장기화되자 2002. 11월이후 LP-Power, ING 같은 “유사세녹스”가 출현, 시판개시

- 산자부, LP-POWER 제조사 (주)아이베넥스 검찰에 고발(2003. 1. 23)

○ 최근 세녹스측은 남아공으로부터 ‘Super-Cenox’ 수입추진 발표(2002. 11. 21)

- 실제 수입이 안되어 성분 등 불분명하나, 세녹스측은 석탄을 액화한 연료유라고 주장.

- “대체에너지 개발 · 수입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여

① 세녹스 재판에 영향을 주고,

② 여론을 유리하게 하며,

③ 대리점 모집과 선입금 수입을 늘리려는 활동으로 추정

※ 국내전문기관(고등기술연구원)은 석탄액화기술이 현재 선진국에서도 유가 40\$/b이하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힘.

□ 향후전망 및 대책

- 현실적으로 재판 종료시까지 상당기간 소요예상
 - 제조사는 “최대한 사건을 끌고 세금납부를 연기하며 판매를 지속” 하려는 입장으로 추정
 - 현재 판매점포당 선납금(5,000만원정도)을 받고 세녹스를 공급하고 있어, 제조사 파산·도피시 판매업소 피해속출 가능성
- ※ 2003. 2. 10. 1차공판이 있었으나, 세녹스측 쉘석으로 공판연기(3. 20)
 - 쉘석의 이유도 재판기일 연장을 의도한 것으로 추정됨.
- 2003. 3월말 제조행위 종료 기대
 - 국세청의 “세금징수강행” 및 “시설압류절차”가 관건
 - 그러나, 제조사는 2003. 3월 일부 미납세금을 납부후 재연기신청 등으로 시일을 최대한 끌 가능성

〈향후 대책〉

일단 서울지법의 재판결과를 주시하고, 충분히 대응하며 그 이전에

- ① 국세청·시도등과 공조, 세금징수 및 판매소 단속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
- ② 석유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조정명령을 발동, 석유화학사 등으로부터 세녹스측에 공급되는 용제 차단 추진

③ 석유사업법령 개정으로 행정대집행,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중지명령, 석유화학사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통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석유제품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 벌칙 및 과징금 조항 정비 추진 등

2. Cenox 관련 쟁점사항 분석

세녹스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측와 판매주유소 등의 주장 등에 대한 산자부의 답변을 정리한 것임.

주장 1.

산자부는 왜 Cenox를 단속하는가?

산자부답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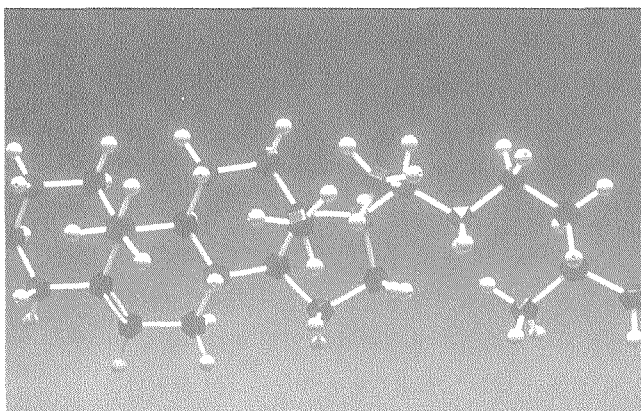
Cenox는 솔벤트(60%), 톨루엔 등(30%), 메틸알콜(10%) 등을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6조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유사석유제품이다. Cenox는 불법제품으로 객관성있게 정해진 규격이 있지 않으므로 이 성분 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석유사업법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보관,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석유제품(특히 휘발유)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어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300원이면 정유사 출하가격이 350원정도, 교통세 등 내국세가 860원정도,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이 합쳐 100원정도 된다. 즉 세금이 출하가격의 250%정도가 된다. 누구나 탈세의 유혹을 느낄수 있다. 이에 더해 제품의 특성상 계량·품질·상표를 일반인이 쉽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이유를 들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 탈세행위가 있어왔다.

탈세행위의 방법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를 혼합하던지, 물량을 속이거나 몰래 빼돌리거나 하는 방법인데, 이번 세녹스는 대체에너지라고 주장하면서 대체에너지나 알콜연료 등 특수한 대접을 받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몰래 탈세행위를 하지않고 법의 틈을 파고들어 조세부과로 비싸진 휘발유 가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저항심리를 이용하고, 이에 동조하는 언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탈세행위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기업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Cenox는 제조사에서 도매가격에 리터당 660원에 판매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리터당 990원 선에서 판매된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이 계산이 가능하다. (주)프리플라이트 관할 세무서인 목포세무서는 (주)프리플라이트에 2002년 6월에서 12월간 세녹스 판매물량에 대해 세금을 99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동안 (주)프리플라이트는 총매출액이 87억9백만원이다. 총매출액보다 세금 부과액이 많은 기업이다.

결국, 세금을 정상적으로 낼것으로 기대할수 없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세금을 연기하면서 리터당 990원에 판매하는 결과, 인근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품질규격에 맞는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영업을 망치고 석유의 유통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주며, 사회의 법질서과 법감정을 훼손한다. 소관부처로서 단속이 불가피하다.



주장 2.

알콜이 법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세녹스는 알콜에 톨루엔이나 용제를 섞은 것이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열거된 ①석유제품+다른석유제품, ②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③석유화학제품+다른석유화학제품 중 어느 것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세녹스를 석유사업법 26조를 근거한 유사석유제품으로 볼수 없다.

산자부답변 2.

“석유화학제품”의 정의가 현행법령에 명백하게 나와있지는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석유화학제품이란 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 또는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가6, 2001헌가7)

석유사업법 제2조(정의)는 석유를 “원유·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으로 정의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석유화학제품이란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이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세녹스는 불법제품이라 일정한 규격을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일단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성분분석(2002. 6. 21)한 바에 의하면

- ① LNG에서 추출된 메틸알콜(Methyl Alcohol)과
- ② 석유에서 추출된 용제(Solvent)와
- ③ 석유에서 추출된 톨루엔(Toluen) 등을

10 : 60 : 30정도의 비율로 섞은 것으로 나와있다. 따라서 3가지 성분 모두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한다. 즉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섞은 것으로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주장 3.

알콜이 석유화학제품이라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고, 화학사전에도 어떤 것은 석유화학제품으로 어떤 것은 석유화학제품이 아닌 것으로 나와있다. 즉 알콜이 석유화학제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단속하면 안된다.

산자부답변 3.

알콜은 에틸알콜(Ethyl Alcohol)과 메틸알콜(Methyl Alcohol)로 대별되는데, 메틸알콜은 석유를 원료로 석유화학공정을 통하여 추출되므로 명백하게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한다. 에틸알콜은 석유를 원료로 석유화학공정을 통해 추출되는 경우와 곡식을 발효하여 추출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석유화학제품이란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으로 정의되므로 에틸알콜의 일부, 즉 술(酒)은 석유화학제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석유가 원료가 되는 메틸알콜의 전부와 석유에서 추출된 에틸알콜은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한다. 세녹스에 포함된 알콜은 메틸알콜로서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것이다. 따라서 세녹스에 포함된 알콜은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한다. 즉 세녹스에 포함된 알콜은 술(酒)와는 성분이 전혀 다르다.

주장 4.

석유사업법 26조에 나와있는 것은 유사석유제품의 예시규정으로 볼수 없다. 시해법규라면 예시로 해석될 수 있으나, 민주국가에서 단속법규는 예시로 해석할 수 없다. 단속의 근거가 명백하게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

산자부답변 4.

석유사업법 26조는 유사석유제품을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

다. 예시가 아니라 명백한 단속의 근거가 된다.

주장 5.

우리(프리플라이트)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세녹스가 첨가제로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고, 세녹스를 석유제품이 아니라 첨가제로서, 자동차연료탱크 용량의 40%만 판매했다. 산자부가 첨가제를 단속하는 근거는?

산자부답변 5.

현행법상 산자부는 첨가제 자체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환경측면에서 첨가제가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세녹스가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석유사업법 제26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첨가제가 그 자체로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고 석유사업법 제26조에 해당한다면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첨가제인지 아닌지는 의미가 없다.

한편,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검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는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① 연료에 “소량”을 첨가하여야 하고, ② “환경부령으로 따로 정한 첨가제에 해당되어야” 한다. 세녹스에 대한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는 “전체연료의 40%를 첨가제로 혼합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또 환경부령으로 정한 8가지 첨가제의 종류중 어떤 첨가제로 인정하였는지는 검사결과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세녹스가 첨가제로 적합하다는 국립환경

연구원의 인정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립환경연구원의 인정에 하자여부는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산자부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지 프리플라이트가 유일한 근거로 주장하는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흠이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재정부에서도 세녹스와 성분이 유사한 LP-Power 라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사휘발유에 해당하며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힌바 있고, (2001. 11. 2질의회신) 세녹스에 대해서도 재 정부는 이 회신에서 휘발유와 혼합비율이 최대 40%인 점과 이 제품이 단독으로 자동차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연료첨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세녹스를 교통세 부과대상으로 인정하였고, (주)프리플라이트가 소재한 관할 목포세무서는 2002. 6~12월분 세녹스판매물량에 대한 교통세를 100억원으로 계산하여 부과했다. 이에대해 (주)프리플라이트도 1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연기요청하였다.

주장 6.

알콜연료는 석유제품이 아니다. 석유제품 아닌 것은 주유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고 본다. 주유소에서 라면이나 장갑도 팔고있지 않는가? 주유소에서 알콜연료를 주유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면 주유기 없이 비닐통으로 판매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나아가 알콜연료를 주유소 아닌 별도의 판매소에서 판매하면 석유사업법과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산자부답변 6.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주유소는 휘발유·등유·경유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해 실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라고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 제32조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는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즉 주유소가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①휘발유·등유·경유를, ②고정된 주유설비를 통해, ③실소비자에게 ④직접판매해야 한다. 이는 ①②③④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석유사업법 제1조(목적)에 비추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제품의 품질확보에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는 유통질서저해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라면이나 장갑을 판매하는 행위는 문리적으로 보면 ①②③④중 몇 가지를 위반하는 것이 되지만 동법 제1조에 비추어보면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로 볼 수 없다.

알콜연료는 일단 유사석유제품이므로 알콜연료를 주유소·전용판매소·기타의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 이든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모두 석유사업법 위반이 된다. 알콜연료를 자동차연료가 아닌 보일러 등에 사용시 그 자체로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 품질·환경·안전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주장 7.

실정법을 떠나 정책적으로 보면 어떻든 세녹스가 공급이 불안한 석유를 대체하는데, 정부가 대체에너지로 오히려 육성해야 하지 않는가?

산자부답변 7.

현행법을 떠나서 에너지안정공급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대체에너지를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에너지”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석유공급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석유를 대체하는 원자력·석탄·수력 등을 모두 대체에너지로 보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세녹스는 구성원료 3가지가 모두 석유에서 추출되므로 넓은 의미의 대체에너지에 포함될 수



없다. 즉 세녹스 소비가 많아질수록 석유수입도 늘어난다. 따라서 세녹스는 대체에너지가 아니고, 육성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대체에너지를 지원육성하는 법으로 보더라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은 대체에너지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각호의 1을 9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세녹스는 열거된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고, 세녹스의 구성성분(메틸알콜·톨루엔·솔벤트)중 어느 것도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에너지를 지원육성하는 법에서 보더라도 세녹스는 대체에너지가 아니다.

주장 8.

일본 등 외국에서 알콜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보다 **전향적으로** 알콜연료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산자부답변 8.

브라질의 경우 사탕수수에서 추출된 에틸알콜을 사용하는데, 농촌지역에서 폐기되는 풍부한 사탕수수를 활용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폐식용유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대체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자부는 이를 주유소에서 합법적으로 시판하도록 하고 있다. 석유도입을 대체하는 식물성연료이기 때문이다. 식물성이 아닌 알콜연료는 석유를 대체하지 않는다. 단순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해 휘발유대체유류로 판매하여 돈을 벌려는 것이다.

일본은 석유화학공정에서 추출된 메틸알콜을 사용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유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일반 석유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수 없고, 일부지역에서 휘발유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녹스와 성분이 비슷한 알콜연료를 사용하는 일본의 경우 차량화재, 고장발생 등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메틸알콜이 포함된 알콜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시 연료탱크, 연료파이프 등에 부식이 발생하고, 연료호스, 연료필터 등의 고무 또는 접착제의 열화로 인한 누유(漏油), 화재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일본 燃料油脂新聞 1997. 9. 1자)

다른 일본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알콜연료는 NOx 와 알콜산화물(알데히드類)의 대기중 배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일본 全國石油協會) 요약하면 알콜연료가 자동차기계장치·안전·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것이 증명되기 전에 시판을 허용하기는 어렵다. 알콜연료는 우선 대체에너지도 아니고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에너지원도 아니며 명백한 유사석유제품이고, 제품가격의 70%에 달하는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사업이익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알콜연료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면 ①동일 용도의 석유제품과 같은 공적부담(조세·비축의무·부과금) ②현재나 미래의 자동차성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시험결과 ③대기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증명 ④별개의 유통망과 수급보고체계를 구비한 다음, 정책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